

5.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중개정 법률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 1998-50호

개 정 이 유

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됨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운용·관리업무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는 한편,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의 일부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동 기금의 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산업은행 등을 추가함.
- 나.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·관리 업무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함.
- 다. 보증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종전의

최고 요율한도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
- 라.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총액한도의 기준이 되는 범위에 동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 외에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의 전대차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재전대받은 금액을 추가함.

주택회보